

2022 LH 사회적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수시)

- 사회적 주택은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운영기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신청일자 기준으로 하되,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본인)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별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2022년도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전년도(2021)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22년도 변경 자산·자동차가액 기준 반영)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입주 자격검증 통과 후 주택 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3개월 내 퇴거 또는 인근 장기미임대주택으로 이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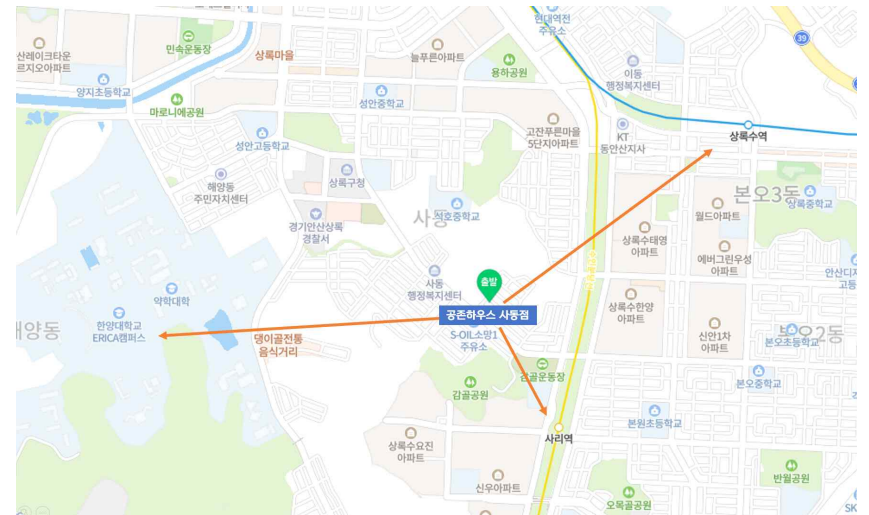
1 모집일정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등 추후 개별안내 드립니다.

2 공급주택

공존하우스 사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당골2길 4(사동)	
주택정보	
사용 승인일	2020-12-30
층수	4층
주 용도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보안시설	CCTV, 비디오폰 현관문, 소화기
호수/방개수	특징
15호/원룸	청년 · 대학생 · 취업준비생 추천 주택 - 1km 이내(직선거리)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 시곡중, 감골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등 위치 - 은행, 주유소, 편의점, 병원, 음식점, 마트 등 편의시설 인근 위치 - 수인분당선 사리역, 도보 약 12분 (800m)



공급대상	구분	면적(㎡)			임대조건(원)		모집호수	비고
		임대	전용	공용	보증금	임대료		
101호	원룸	44.852	13.751	31.101	-	-	없음 (커뮤니티실)	-
102호	원룸	44.852	13.751	31.101	5,000,000	162,600	1	1인실
201호	원룸	44.852	13.751	31.101	5,000,000	173,900	1	1인실
202호	원룸	44.852	13.751	31.101			±	1인실
203호	원룸	44.852	13.751	31.101			±	1인실
204호	원룸	44.852	13.751	31.101	5,000,000	175,200	1	1인실
205호	원룸	44.852	13.751	31.101	5,000,000	175,200	1	1인실
301호	원룸	44.852	13.751	31.101	5,000,000	172,600	1	1인실
302호	원룸	44.852	13.751	31.101	5,000,000	172,600	1	1인실
303호	원룸	44.852	13.751	31.101	5,000,000	172,600	1	1인실
304호	원룸	44.852	13.751	31.101	5,000,000	173,900	1	1인실
305호	원룸	44.852	13.751	31.101	5,000,000	173,900	1	1인실
401호	원룸	44.852	13.751	31.101			±	1인실
402호	원룸	44.852	13.751	31.101			±	1인실
403호	원룸	44.852	13.751	31.101	5,000,000	172,600	1	1인실

* 보증금과 임대료는 조정 가능합니다.

설치 및 부대시설	
개별시설	
기본옵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싱크대, 불박이장, 전라레인지, 인덕션(2구), 신발장, 디지털도어락, 비디오폰
난방방식	개별난방(도시가스)
관리비	4만원 (항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개별공과금 별도)
비고	각 호실별 다용도실 (세탁기 등 위치)
공용시설 (입주자들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룸(101호)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기타 비품들
1F	무인택배함, CCTV, 쓰레기 분리수거함, 주차장

* 건물 전경 및 내부



3 입주자격

■ 청년 중 아래의 자격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년이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나이가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직장 재직여부와 무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청년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 또는 모(이혼 등)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청년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해당 세대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8,800원 이하 개별 자동차 3,557만원 이하) <p>※ 신청자 본인이 세대원 보유 세대주일 경우 세대(세대 내 본인과 부모) 자산 기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일 경우 본인 자산 기준</p>

※ 신청자는 자격요건 중 복수의 자격을 갖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모 중 1인만 가구원에 포함하여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됩니다.

- ①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②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 시 등본 분리 전 가장 최근에 함께 거주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초본 확인)
- ③ 등본 분리 전 신청자 본인과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한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기 준		1인	2인	3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100%이하	3,212,113	4,844,370	6,418,566
	110%이하	3,533,324	5,328,807	7,060,423
	120%이하	3,854,536	5,813,244	7,702,279

※ 청년①의 본인 및 부모 : 3인 100% 이하 소득 확인

※ 청년①의 본인 및 부 또는 모 : 2인 110% 이하 소득 확인

※ 청년②의 본인 : 1인 120% 이하 소득 확인

■ 자산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구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 ①	청년 ②
소득 (위의 소득기준 참고)	범위	본인 또는 부모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수급자 등 여부 판단	검증 대상 수에 따른 기준	3,854,536원
총자산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안함	32,500만원	28,800만원
자동차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안함	3,557만원	3,557만원
주택소유 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IV. 입주자 선정기준

1.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에 입주신청서와 필요 서류 제출
2. LH에 자격·자산 검증 서류 심사 (약 6~8주 소요)

*예비입주자

- 신청자가 공급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 순번대로 공급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순번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 신청한 운영기관 외 타 운영기관의 사회적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입주자격검증은 기존 자료로 대체하며 운영기관별 별도 선정 기준만을 심사하여 입주
- ※ 단, 기존 예비입주자가 대기하고 있는 호를 제외한 공실에 입주 가능
- ※ A운영기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B운영기관 입주를 희망할 경우 A, B기관 모두에 이를 통보하고 두 기관이 협의가 된 경우에만 가능

절차	일정	내용 및 공지	비고
신청접수	2022.05. ~ 입주완료시까지	1차 서류: 이메일 접수 2차 서류: 우편 접수	jo@seempower.kr
자격심사	서류접수 후 약 4주 소요	홈페이지/개별 안내	
주택개방	개별 안내		
입주자 발표	개별 안내/홈페이지		
계약체결	개별 방문		
입주	입주자와 협의 후 진행		

V.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접수 : 입주신청서 및 각종 동의 서식 작성 후
서류 스캔 이메일(jo@seempower.kr)로 발송
- 이메일로 서류 접수를 하신 분은 자격검증 통과 이후 제출 서류 원본을 등기우편 혹은 계약서 작성 시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② 현장 및 우편 접수 : 입주신청서 및 각종 동의 서식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등기서류는 접수 기간 마감일까지 도착분으로 한함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13길 51,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2층
사회주택본부 담장자 앞 (우편번호 : 08203)
- ③ 문의 : 02-999-3267 , 010-9579-9721 및
공존하우스 홈페이지 <https://gongzonhouse.com/>

VI. 입주자격 검증 등

□ 입주자격 검증

- 입주자격은 신청유형(신청유형 세부기준 포함)에 해당하는 자 중 자격요건 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보 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무주택 및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 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내 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① : 본인 및 부모, 한부모가족, 청년② : 해당세대(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동의서 서명 대상	금융기관에 서명 대상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동의서 유효기간 등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제출일부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제출 서류 안내

- 제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서류 (신청자 전원 제출)

제출서류	내 용	발 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정자체)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① : 본인 및 부모 - 한부모가족, 청년② : 해당세대(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④ 본인과 부모 세대 분리에 관계없이 모두 서명 ⑥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본인과 등본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초본 확인 예정) ③ 본인과 등본 분리 전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하였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 □ 반드시 모든 동의 란에 체크 	-제공 (불임양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 2. 자격요건별 제출서류 (본인의 자격에 따른 서류 제출)

제출서류	내 용	발급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청년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정자체)서명 - 청년① : 본인 및 부모 -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④ 본인과 부모 세대 분리에 관계없이 모두 서명 ⑥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본인과 등본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초본 확인 예정) ③ 본인과 등본 분리 전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하였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 ※ 반드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불임양식)
청년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정자체)서명 - 청년② : 해당세대(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 반드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불임양식)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이혼시에 한해 제출 *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해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5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 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및 자산 소명은 관련 기준 충족을 요하는 전형(청년①, ②)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자산 조회결과에 따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탈락 처리 됩니다.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주택은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르므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출가능 여부는 시중은행에 직접 확인) 임대인(운영기관)에게 대출가능 상품(별도 협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관련 (기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자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입주자격</td> <td>최대 거주기간</td> </tr> <tr> <td>청년</td> <td>6년</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기간 중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할 수 있으며(총 9회, 최장 20년 거주가능), 소득, 자산 등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6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6년				

관련항목	유의사항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여부 및 가능범위는 해당 주택 운영기관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6 문의처

주소 및 연락처

□ 입주자격 및 서류제출 안내: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02-999-3267, 010-9579-9721 jo@seempower.kr se@seempower.kr
주거복지재단	031-738-4396

2022. 05. 20.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소득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제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제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사업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축산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 농업소득=국제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여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공품(일시금으로 받는 공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로지원금은 제외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 자산	일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금융자산	부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